



문서번호	일자리정책과-16434
결재일자	2014. 12. 1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일자리지원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재정국장	
박호림	이광현	라병오	12/12 김종순	
협	언론팀장	양상섭		
조	자치행정팀장	문광선		
	정보화기획팀장	정창열		

201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

2014. 12



성 동 구

(일자리정책과)

2015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

실업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.

I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: 2015. 2. 2.(월) ~ 6. 30.(화)
- 접수기간: 2014. 12. 15.(월) ~ 12. 19.(금)
 - ※ 노숙인 공공근로 신청은 노숙인 쉼터 통해 별도 신청
- 선발인원: 총 206명 내외(일반: 198명, 노숙인: 8명)
 - ※ 선발기준: 2015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하고,
 - ※ 선발인원은 65세이상 반일근무자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사업비: 843,385천원 (총예산의 1/2)

(단위: 천 원/명)

구분	집행액(예상)			선발인원
	시비	구비	계	
예산총액	1,184,240	502,531	1,686,771	-
상반기	590,370	253,015	843,385	206명

※ 2015년 예산(시,구비) 확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.

■ 대상사업

사업명	세부사업 유형
정보화 추진사업(6명)	행정정보화 사업, 자치구 홍보사업, 각종 전산화 사업
서비스 지원사업(64명)	각종 현황조사 지원, 도시 시설물 관리 및 실태조사, 복지기관 각종도우미,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
환경정비 사업(129명)	공원 등 쓰레기 수거, 전통시장 정비, 불법광고물 정비 등
기타 사업(7명)	마을공동체 양성사업,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업

II

선발기준

■ 선발기준

- 신청자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【2015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】
- 대상사업에 따라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후 가중치(재산상황, 세대주 등)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해 선발(선발기준표에 의거)

-1순위 단위사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발·배치

※ 공공근로 선발 기준 점수표

고려요소	판 단 기 준	점수배분 (100)	비 고
재산상황 (건축물, 주택, 토지) 과세표준액 합산	· 4.5천만원 미만 : 10점 · 9천만원 미만 : 5점 · 1.35억원 미만 : 0점	10 (10, 5, 0)	재산조회 결과
가구소득	(지역, 직장보험포함) · 2만원 미만 : 20점 · 3만원 미만 : 15점 · 5만원 미만 : 5점 · 5만원 이상 : 0점	20 (20, 15, 5, 0)	건강보험료 조회결과
공공일자리 사업참여	사업 개시일 기준 최근 1년 ·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25점 · 참여 5개월 이하 : 15점 · 참여 6~9개월 : 5점	25 (25, 15, 5)	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
세대주	세대주 여, 부	10 (10, 0)	
부양가족수 (세대주동거인제외)	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	15 (15, 10, 5, 0)	주민등록표 확인
취업 취약 계층	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, 한부모가족	10(10, 0)	중복 가점 불가
	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	5(5, 0)	
	장애인 및 가족	5(5, 0)	
자격요건	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	10(10, 5, 0)	

○ 중증장애인(2급이상) 근로무능력자로 판단, 참여배제

○ 전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근무 불성실로 인해 배제자는 참여불가

- 만39세 이하 사업참여자는 사업구분(청년, 일반)에 관계없이 재산 및 소득 배제기준 적용 안됨.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혜여부, 고려요소별 판단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(단, 신청자가 많을 시 일반참여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)
- 노숙인 쉼터 입소자는 노숙인 공공근로 신청토록 쉼터로 이관

■ 배제 대상자

- 가족합산 재산이 1.35억원 초과인 자
-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배우자
- 실업급여 수령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연속 2회(10개월)이상 참여한 자
- 2년간 2회(10개월)이상 참여한 자(55세이하)
-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
- 1세대 2인이상(단, 청년 맞춤형사업 참여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),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, 근무무능력자(장애2급 이상)

■ 선발구분

구 분		선발근거	비 고
일반	일반선발	선발기준표에 의거	
	특별선발	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	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%이내
청년	청년선발	2015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의거	청년실업자를 위한 사업예산의 10%이상 집행
노숙인	노숙인선발	2015년 공공근로사업 운영계획	노숙인 쉼터에서 선발

Ⅲ 세 부 운 영 계 획

■ 참여자 모집 및 선발

- 참여자 신청 접수: 2014. 12. 15 ~ 12. 19 (동주민센터)

- 신청자 재산 등 각종 조회: 2014. 12. 29 ~ 2015. 1. 16 (총괄부서)
- 참여자 선발 및 배치: 2015. 1. 19 ~ 1. 26.
 - 선발여부: 총괄부서(일자리정책과)에서 일괄 유선 및 문자 통보
 - 배치부서 및 근무장소: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유선통보
- 추가 선발(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)
 -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중 대기 순번에 따라 추가선발
 - 배제자 중 배제사유 소멸 시 대기자로 편입

■ 사업운영 및 참여자 관리

○ 근로조건

- 근무기간: 2015. 2. 2.(월) ~ 6. 30.(화)
(근무일 101일, 주차 21일, 월차 5일)
- 근무시간: 1일 6시간, 주 5일근무(탄력근무자 주 30시간 근무)
- 임금: 일급 34,000원 / 부대경비 5,000원(근무일수에 한함)
 - ※ 65세 이상 반일(3시간) 근무자 일급 17,000원 지급(부대경비 별도)
- 만근 시 주월차 수당 지급
- 지급일: 근무 월 익월(다음달) 5일 개인계좌로 입금
(익월 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지급)

※ 단,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이 현금지급(신용불량자인 경우만 현금지급가능, 다른사유로 예외 적용 불가)

[붙임 11] 현금지급시 현금지급대장 작성관리

- 4대 보험 의무가입

■ 근무개시 전 참여자 교육

- 일 시: 2015. 2. 2.(월) 근무개시 전
- 장 소: 각 사업 추진 부서
- 주 관: 각 사업 추진 부서장
- 교육내용: 사업내용 설명, 과업지시 및 안전교육
 - 【붙임7】 공공근로사업 근무수칙(안) 전달

- 【붙임8】 근로조건(표준안)을 참고하여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 작성, 명시
 - ※ 본인 확인 후 근로조건, 보안서약서 【붙임10】 서명날인 받아 통장사본과 같이 부서 자체 보관

■ 사업장 관리

-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
 - 공공근로 참여자 명부 【붙임11】, 개인별 근무기록부【붙임9】 작성
 -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, 철저한 지도·감독 실시
-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: 공공근로사업 근무수칙 제5조에 의거

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- 참여자 민간재취업을 위한 취업 교육 실시 (4월~5월 중)
 - 운영방향: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자기탐색(성찰)을 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연계
 - 교육내용: 자기탐색 및 취업동향, 성공취업전략, 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면접노하우 및 자기소개법, 실습·피드백
- 직업능력 개발 및 구직활동 지원 (5월 말~6월 중)
 - 지원내용: 직업심리검사, 취업박람회, 취업컨설팅 등 지원 (참여시, 1일 최대 3시간까지 근무시간 인정)

IV **홍보 사항**

■ 언론매체 및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

-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
- SNS, IPTV, 지역신문 등 활용
- 현수막 게첨 및 각동 직능단체 회의시 홍보요청

V **행정 사항**

■ 신청·접수 철저(동 주민센터)

○ “신청자 확인” 및 점수부여 철저

○ 신청·접수분의 전산입력(엑셀양식) 자료 제출(12. 24.까지)

■ **사업추진 철저(각 사업부서)**

○ 근무 개시 전 부서 배치자 유선통보 및 참여자 교육

○ 관리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및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유출사고 사전예방

○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시 즉시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통보

○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(별도 공문 시행)

- 붙임: 1.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. 1부.
2. 공공근로사업 양식(붙임1~11) 각 1부.
3. 공공근로 세부사업 내역 1부.
4.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상반기 사업 심의의결서 1부. 끝.